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3. 3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1년 2월 17일

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1년 2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3. 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경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(안 제4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(안 제5조~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
 -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조직되어 활동하는 영등포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, 재향경우의 자긍심을 선양하는 한편 구민의 안전과 공공 질서 의식에 기여하려는 것으로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,
 - 안 제3조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
상위법 제15조에 따르면 경우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,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등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.
 - 안 제4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 완료 시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일반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,
 -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과 정산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관내 치안유지와 관련한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며,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이 공익사업에 한정되어 있어,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 306 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2월 일

발의자 : 유승용 의원 외 3명

1. 제안이유

「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경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(안 제4조)
- 라.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(안 제5조~제6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향경우”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재향경우회”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 사업 등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
2.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
3.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, 다문화가정 학생 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

4. 교통보조 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사업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

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.

제4조(지원 신청 및 정산 등)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)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